

「전안법」 시행이 가져온 변화의 바람

개정 「전안법」 시행으로 제품안전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예컨대 의류와 장신구 시험비용에 대해 걱정하던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 남·북부와 부산시를 거점으로 유해물질 시험장비와 시험분석소가 구축되었다. 그동안 안전인증 시험항목, 절차, 대응에 취약했던 소상공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인증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구매대행업자는 KC인증 이슈가 풀리면서 해외직구 거래량이 급증하고, 품목도 다양해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는 보다 강화된 「전안법」으로 안전한 제품생활을 보호받게 됐다.

글 | 김문정 한국섬유소재연구원(KOTERI) 팀장

제품안전관리제도와 「전안법」 개정 배경

전 세계 각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완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것을 강제든 또는 자율적이든 금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걸맞게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와 더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는 제품의 합리적 선택과 사용,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 등 사업자, 소비자,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품 출시 전 「전안법」을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안전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기타 사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안전에 위협을 가한 제품 또는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장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섬유패션산업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전안법」은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섬유제품, 잡화 등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제품관리 정책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일원화한 법으로 2015년 1월 7일 공포했고, 2017년 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품안전에 대한 사전인증의 의무가 정부, 제조·판매자,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느끼는 체감차가 크게 작용해 시행유예와 개정안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위해의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관리하고자 했다. 제조·판매자는 제품안전에 대

〈그림1〉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분류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높 음	←	(위해도)	→	낮 음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구분	마크	절차			
안전인증대상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 증 →	판 매
안전확인대상		제품시험 →		인 증 →	판 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시험 →			판 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없음	제품시험 의무없음 →			판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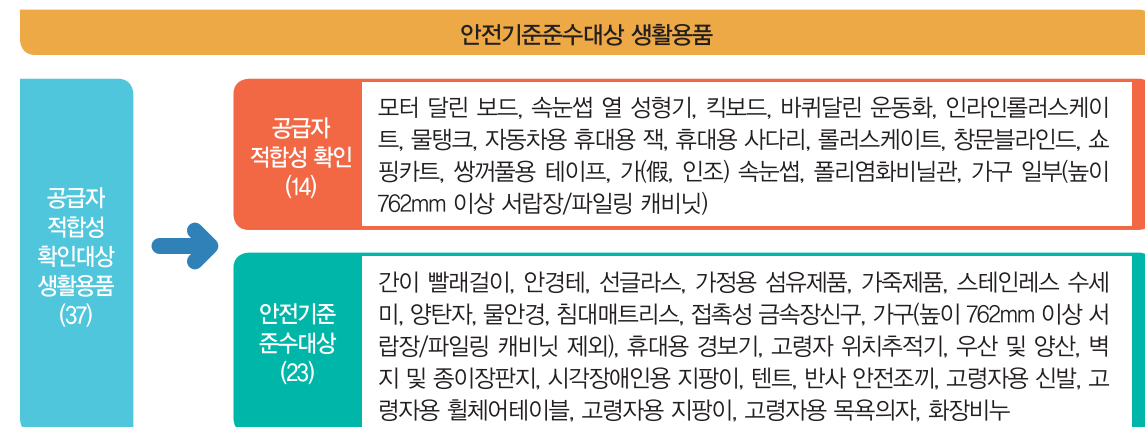
한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되는 부담 탓에 “영세 의류상인, 해외제품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소비자는 당시 가슴기 살균제, 생리대 유해성 논란 사건의 학습으로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법률로 인지하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었다.

이로 인해 「전안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에 이르게 됐다.

달라진 「전안법」 개정사항과 시행 이후 변화

개정된 「전안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인증 제도로 운영되던 개정 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에서 위해도 수준에 대한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해 시장 감시를 통해 관리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다. 위해도 평가를 통해 지정된 ‘안전기준준수

〈그림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림3〉 개정된 「전안법」상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

「전안법」상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		2018년 7월 1일부터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시험검사 ○ KC마크 표시 ○ 제조국,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표시 ○ 안전기준 적합 서류 보관 ○ 안전정보(KC마크 등) 게시 ○ 안전기준준수 ○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시험검사 × KC마크 표시 × 제조국,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표시 ○ 안전기준 적합 서류 보관 × 안전정보(KC마크 등) 게시 × 안전기준준수 ○

대상 생활용품’은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 등), 가죽제품(가죽으로 만든 가방, 의류, 지갑 등) 등 23개 품목 제작·수입 시 정부가 마련한 ‘제품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제품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므로 업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6개월간의 준비 끝에 9월 27일에 출범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두어 유통제품 사후관리, 위해 정보수집·분석 및 사고조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을 확보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 표시 및 인터넷 게시의무를 면제하고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만 표시하면 된다. 단, 어린이용 의류제품(만 13세 이하가 사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반드시 제품시험 및 KC마크 표시를 해야 한다.

달라진 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제도는 새로운 소비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불량제품·가품 선별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 구매대행은 현재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총 250개 품목) 중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하고,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는 215개 품목에 한해 구매대행이 가능하다. 구매대행에 대한 사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및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의무도 추가됐다. 이는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과 안전관리대상제품 여부 등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병행수입제품의 경우 선행 수입된 제품이 있다면, 정식 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이러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기타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추가 신설되면서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제작·수입하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인증을 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전안법」 개정 후 시행 시점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의류가 위해도가 낮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KC마크 표시 및 인터넷 게시의무가 면제되어 「전안법」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한숨 돌렸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구매대행업체에서는 “안전정보가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을 허용하지 않던 개정 전과 달리 215개 품목에 대해서는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해 만족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7월 이후 해외직구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었다.

시험기관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전안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들의 시험상담과 급행으로 의뢰되는 시험 건 때문에 상당히 바쁜 연말을 보냈다. 하지만 개정 「전안법」 시행 이후 시험상담과 달라진 「전안법」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지만, 한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민감한 부분의 품목이 제외되고, 여러 가지로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된 까닭도 있겠지만, 이제는 원자재·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준도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에 제품안전시험을 진행하는 시험기관과 연구원들은 기업이 쉽고 편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정부는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파문, 라돈침대 등 원자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에 있어 원자재의 중요성도 커짐에 따라 원자재 유해성 조사, 분석, 원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재발 사태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안법 개정 전 관련 논의과정 중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원료·자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자재 및 재료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인증·검사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안전 시장 감시 기능체계 구축 전인 올해 초,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시험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기적시에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남·북부와 부산시를 거점으로 유해물질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시험분석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섬유제품(의류, 원단 등), 접착성 금속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의 기본 유해성시험을 무료 지원하고, 안전관리 대상제품 분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지원 사업을 매칭해 그동안 안전인증 시험항목, 절차, 대응에 취약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안전확인준수 환경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접한 많은 제품 사고들은 국민의 안전한 제품소비생활에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게 되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안법」이 사전인증의 의무에서 시장 감시를 통한 사후관리체계로 일부 완화된 시점이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안전피해는 건강,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제품준수대상에 적합한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위험예방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특성에 맞는 안전책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절차의 간소화나 인프라 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제품안전준수를 유도하고, 정부는 제품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품안전관리체계의 적시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제품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책임이 적절하게 지켜지는지 감독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수반된다면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전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상공인 안전인증 지원에 앞장 선 한국섬유소재연구원

2005년 설립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기간산업인 섬유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섬유전문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R&D(R&D and Business Development) 사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개발은 물론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방위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해 섬유관련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시제품제작·섬유제품 시험검사, 기술정보수집·분석·보급에 힘쓰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최근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준수를 위한 경기도 내 10인 이하 영세 섬유·장신구 분야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품안전시험을 위한 ‘경기도 섬유 유해물질 시험분석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섬유제품·접착성 금속 장신구 제품의 시험비용 지원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사례의 데이터베이스(DB)화를 통해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섬유기업의 발 빠른 대응에 도움이 될 환경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보유하고 있던 KOLAS 인정항목 외 섬유제품 유해물질시험 기본 3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에 대한 인증을 지난 9월 추가로 획득했다.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공신력을 한층 더 높이고, 더욱 강화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기준준수 대상 섬유제품의 시험분석 비용을 75% 지원하고,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추가로 섬유제품 기본 3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과 접착성 금속장신구의 니켈용출량에 대한 시험비용을 한 기업당 10건 이내로 무료 지원하고 있다. S

〈그림4〉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소개

